



MEGASHOW
SEOUL 2014

2014. 8. 28[목] ~ 31[일] | SETEC

★ 참가신청 계약서

1. 신청 / 계약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우편물 수령 주소			
담당자명	사무실 : 휴대전화 :	부서 및 직위	
전화		팩스	
E-mail		홈페이지 주소	
주요출품품목			

★ 상기 사항 중 변동 사항 발생시 즉시 MEGASHOW 사무국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수령자 정보

수령인			부서 및 직위	
전화	사무실 : 휴대전화 :	E-mail		

★ 상기 내용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가신청 / 계약 내역

부스번호	부스구분		부스단가 (b)	참가비 (a*b)	부가가치세	합계
일반 (2014. 7.28까지)	독립	부스	1,700,000			
	기본	부스	2,000,000			
추가신청	코너부스	부스	200,000			
총합계						

★ 코너부스 추가신청은 기본부스 1부스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계약금 납부 <부스비 총액(부가세포함)의 50%>

지정은행 : 하나은행 | 계좌번호 : 183-910018-98404 | 예금주 : 김신 (지페이스)

- 참가신청(계약서) 제출로부터 3주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MEGASHOW SEOUL 2014 전시회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이면 수록)을 수락하고, 계약금(참가의 50%)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동봉, 상기와 같이 참가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이진영



지페이스 대표이사 김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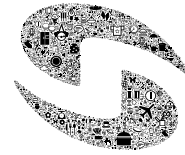


2014년 월 일

회사명 (인)

대표자 (인)

(본 계약서에 날인한 사람은 전사자(참가업체)를 대표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었음을 보장합니다.)
|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시품 상세소개서 1부



MEGASHOW
SEOUL 2014

2014. 8. 28[목] ~ 31[일] | SETEC

★ 전시회 참가규정

제 1 조 (용어의 정리)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 등의 전시참가 신청자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MEGASHOW SEOUL 2014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2 소재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04길 24 소재 "지페어스"를 말한다.

제 2 조 (참가신청)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참가신청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고 참가비의 50%를 계약금으로 납입함으로써 본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전시면적 배정)

1. 주최자는 신청 및 참가비 납입순서, 전시품 성격 순에 따라 전시 위치를 배정한다.
2. 주최자는 전시회장의 공간 조화와 효율 및 전시 효과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제 4 조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3.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전시자는 전시실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못질 등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5 조 (납입조건)

1. 전시자는 참가신청 계약서를 전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참가신청 계약서 제출후 3일 이내 납입하여야 하며 잔금 50%는 2014년 7월 28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잔금을 지정된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참가비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6 조 (해약)

1.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시자가 주최자의 승인없이 참가를 포기할 경우에도 참가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전시자가 전시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전시개시 60일 이전에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납부된 참가신청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3. 전시개시전 45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전시회 참가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만일 이 기간에 전시자가 참가를 포기할 경우 전시회 참가비 전액(100%)을 주최자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8 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내에 지정 기간내에 장치 및 전시품반입, 진열 등의 전시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2. 배정된 전시면적(복도, 휴게실 등) 공간에 전시품을 설치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경우 주최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 못한다
3. 계약된 부스에 과도한 직원상주로 인하여 주변부스에 피해를 줄 경우 주최자의 차기행사 배정 불이익 및 조치에 이의를 제기 못한다.

제 9 조 (전시품 규정)

1.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한 경우 주최자는 즉시 이를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전시자는 전시회 기간중에 판매된 전시품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전시품을 구매한 구매자가 제품의 하자 또는 문제로 인하여 주최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시, 전시자는 주최자의 민형사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 10 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 기간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 11 조 (전시자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2 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 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3 조 (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세텍(SETEC) 전시장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4 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